[서식 예]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(2필지 토지를 통로로 할 경우)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1. ◇①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. ♦ ② ♦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원고에게,

피고 ◇①◇는 ○○시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○-○ 전 2109m² 중 별지도면 표시 1, 2, 3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(가)부분 43.2m²에 관하여,

피고 ◇②◇는 같은 리 ○○○-○○ 전 274㎡ 중 별지도면 표시 3, 4, 5, 6, 3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(나)부분 26.4㎡에 관하여 각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.

- 2. 피고 ◇①◇는 전항 기재 (가)부분 43.2㎡ 위에, 피고 ◇②◇는 전항 기재 (나) 부분 26.4㎡ 위에 있는 막대와 망을 각 철거하라.
- 3. 피고 ◇①◇는 전항 기재 (가)부분 43.2㎡, 피고 ◇②◇는 전항 기재 (나)부분 2

6.4m²에 관하여 각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.
- 5.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○○시 ○○군 ○○면 ○○리 ○○○ 전 2674㎡(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함)를 소유·경작하고 있었고, 피고 ◇①◇의 소유인 같은 리 ○○○-○○ 전 2109㎡, 피고 ◇②◇의 소유인 ○○○-○○ 전 274㎡ 위에 경운기가 통과할 정도의 넓은 통로가 수십년전부터 있어 왔으나(피고 ◇①◇와 피고 ◇②◇는 형제임), 피고 ◇①◇가 같은 리 ○○○-○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면서위 통로를 모두 폐쇄하였습니다.
- 2.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위 통로가 없으면 사실상 같은 리 ○○○○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으므로, 원고는 피고 ◇①◇, ◇②◇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같은 리 ○○○-○, ○○○-○○ 중 별지도면 표시 1, 2, 3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(가)부분 43.2㎡, 별지도면 표시 3, 4, 5, 6, 3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(나)부분 26.4㎡를 원고에게 통행로(폭 2m)로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그 손해보상금으로 금 2,000,000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위 (가), (나)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하였습니다.
- 3. 그런데 피고들은 20〇〇. 〇. 〇.경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막대를 박고 망을 치는 등 같은 리 〇〇〇-〇, 같은 리 〇〇〇-〇〇 중 별지도면 표시 1, 2, 3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(가)부분 43.2㎡, 별지도면 표시 3, 4, 5, 6, 3의 각 점을 차례로 잇는 선내 (나)부분 26.4㎡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같은 리 ○○○-○, ○○○-○○ 중 위 (가)부분 43.2㎡, (나)부분 26.4㎡에 대하여 원고에게 약정에 의한 통행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, 아울러 통행에 방해가 되는 막대와 망의 철거를 청구하며, 또한 장차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

1.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각 토지대장등본

1. 갑 제3호증 지적도등본

1. 갑 제4호증 합의각서

1. 갑 제5호증 영수증

1.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각 사진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서류 각 1통

1. 소장부본 2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도 면

	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 도로			
	00시 00군 00면 00리 000-0 전 2109㎡	1	2 (プト) 43.2 m²	
임야	OO시 OO군 OO면 OO리 OOO-OO 전 274㎡	<u>6</u> <u>5</u>	3 (나) 26.4 m² 4	임야
	OO시 OO군 OO면 OO리 OOO 전 267 4㎡			

임 야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

※ (2) 이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확인 및 형성의 소